

# 심사보고서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
----------	-----

2023. 10. 23.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3. 10.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0. 11.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간 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08시부터 20시까지로 통합하는 한편, 남양주시 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25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 제17조 제2항” 을 “영 제17조” 로 개정
- 별표1의 3
  - 동·하절기 구분을 폐지하고 주간 시간을 08~20시로 통합
- 별표1의 6

-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할 경우 10% 감면사항 삭제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30% 감면사항 신설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선기)

- 본 개정 조례(안)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요금 부과 내용 간소화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동, 하절기 구분을 삭제하고 주간 시간을 08~20시 까지로 통일하고, 남양주사랑상품권가맹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 3만 이상 구매시 주차요금 30%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